

문서번호	안전감사담당관-5317
결재일자	2019.4.3.
공개여부	부분공개(5)
방침번호	

주무관	안전감사1팀장	안전감사담당관	감사위원장	
협 조				
감사담당관				
주무관				



공무원 안전순찰 추진계획

I · SEÒUL · U
너와 나의 서울

2019. 4.

감 사 위 원 회
(안전감사담당관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 제형성	<p>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</p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p>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</p> <p>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수립	<p>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<p>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</p> <p>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 - (온실가스 감축)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,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</p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정책집행	<p>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·인사·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</p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p>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</p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정책홍보	<p>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·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기타사항	<p>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</p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p>◆ 공개 여부를 "비공개"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
공무원 안전순찰 추진계획

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파수꾼으로서 시 및 자치구 전 공무원이 출·퇴근 및 출장 시 상시 안전순찰을 실시하여 “안전 도시 서울”을 구현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「재난사고 예방 법제 혁신대책」 시장 방침 제53호(2019.3.20.)

II 추진배경

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 공무원의 전사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 증대
- 시민보다 앞서 공무원 조직의 안전에 관한 선도적/모범적 행동 필요
- 근무 중이 아니라 일상 속 상시적인 안전의식 제고 시스템 마련



“안전”은 안전에 관련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·공무원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, 특정시기가 아닌 일상 속 상시 관심 필요

III 순찰개요

시 행 일 : '19. 4. 8. ~

순찰자 : 시 및 자치구 전 직원

- 5급 이상(자치구 6급 이상) : 의무 참여
- 6급 이하(자치구 7급 이하) : 자율 참여

※ 중간관리자 이상 술선수범 차원에서 의무적 참여 추진

순찰시기 : 상시(출·퇴근, 출장, 기타 서울시 일상생활 시)

신고방법

- 전용 앱 개발 전 : 기존 모바일 「서울스마트 불편신고」 앱 활용 신고
- 전용 앱 개발 후(7월) : 전용 앱으로 신고

□ 신고대상

- 안전위해요인 :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한 모든 시설
 - 신고 분야 : 도로시설, 교통시설, 건설공사장, 가스시설, 노후건축물, 하천시설, 소방시설, 산사태/옹벽/석축 붕괴위험시설, 상·하수도·에너지시설, 다중이용시설 등 모든 시설물
 - 신고 내용 예시 (붙임 1 참조)

구 분	신 고 내 용
도로시설	① 도로 함몰, ② 도로경계석 훼손 ③ 도로 위 위험물질 방치, ④ 시각장애인 보도 블럭 훼손
교통시설	① 차선 규제봉 파손, ② 교통신호기 점멸 등 불량 ③ 교통표지판 훼손 및 전도, ④ 자전거 전용도로 경계파이프 훼손
건설공사장	① 공사장 주변 안전망 미설치, ② 건설 기자재 도로 위 적치, ③ 공사장 출입구 일반인 통제 미실시
기타시설물	① 통신케이블 단자함 덮개 열림, ② 빗물받이 막힘, ③ 소화전 파손, ④ 상하수도 뚜껑 함몰, ⑤ 공원 내 의자 파손

- 기타 안전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
 - 제도개선사항 접수 시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 채택여부 결정하되
 - 소관부서에서 자체 개선이 가능한 경우 자체 개선 추진
 - 중앙부처 법령/규칙 개정 필요 시 관리카드 작성 제출(붙임 3 참조)

□ 처리체계

구 분	세 부 내 용	비 고
1. 앱 설치	▶ 구글 Play Store/Apple Store 「서울스마트 불편신고」 검색	전 직 원
2. 안전순찰·신고	▶ 일상 주변 환경에서 안전위해요인 발견 시 앱을 활용하여 (사진 및 지도 등) 신고내용 작성·전송	전 직 원
3. 접수 및 분배	▶ 전송된 신고내역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	응 답 소
4. 신고내용 처리	▶ 즉시 처리 원칙 : 민원사무 처리기간 준수 ▶ 안전 외 신고사항은 해당부서/기관 이첩 ▶ 사·자치구 소관이 아닌 사항은 해당기관 신고토록 안내 종결	처리부서
5. 신고실적 제출	▶ 부서별, 기관별 붙임 서식에 따라 신고실적 제출	신고부서
6. 모니터링 실시	▶ 월별 신고실적 및 처리 상황 관리, 위해요인별 분석 등 ▶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관리, 전문가 자문 등 추진	안전감사담당관

IV 모바일 앱 개발

□ 사업명 : 「서울스마트 불편신고」 앱 기능개선

□ 사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2개월

□ 소요예산 : 35,000천원(재난관리기금)

□ 주요내용

○ 「서울스마트 불편신고」 홈페이지 구성화면 하단 공무원 인증 메뉴 신설



○ 안전순찰 신고화면 신설 : 공무원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 신고 가능



○ 실적 관리 및 통계분석 기능 추가

- 부서정보 포함, 부서별/기관별 실적 관리 및 통계 분석 가능

□ 추진 일정

○ 재난관리기금 신청 및 재배정 승인 완료(하천관리과) : ~ '19. 3월

○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및 발주(공간정보담당관) : ~ '19. 6월

○ 직원 전용 안전순찰 앱 서비스 실시 : '19. 7월 ~

V

활성화 방안

평가실시

- 평가시기 : 연 1회(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신고내역 등 평가)
- 평가결과 : 부서별, 기관별, 개인별 포상
- 평가방법 : 정량적·정성적 평가, 부서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평가 실시

※ 평가에 관한 사항은 평가시기에 맞추어 별도 평가계획 수립 실시

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가 부실한 경우 엄중 문책

- 처리사항 관리·감독 및 처리부서 이행실태 점검/분석 추진
- 분석결과에 따라 기동감사 또는 다음연도 정기 감사대상 선정 등

VI

행정사항






협조사항(전부서)

- 부서별/기관별 “공무원 안전순찰” 담당 지정, 매월 실적 제출(붙임 2 참조)
 - 담당직원은 소관부서 직원 신고 내역 등 일반적 관리
 - 안전 위해요인 미조치 시 비상연락체계 유지

공무원 안전순찰 관련 2020년 소요예산 편성 추진(8월~)

- 붙임 1. 시설별 안전위해요인 신고 및 처리결과 사례 1부.
2. 안전순찰 신고 실적 제출양식 1부.
3. 안전조치 유예/완화/미비 규정 혁신 관리카드 1부.
4. 「서울스마트 불편신고」 앱 설치 및 신고 화면 1부. 끝.

시설별 안전위해요인 신고 및 처리결과 사례

시설별	신고 및 처리결과		시설별	신고 및 처리결과	
도 로	도로 파손		교 통	쓰러진 교통표지판	
	신고내용	처리결과		신고내용	처리결과
					
	도로경계석 훼손			차선규제봉 파손	
	신고내용	처리결과		신고내용	처리결과
					
도로 위 위험물질 방치		보행신고기 불량			
신고내용	처리결과	신고내용	처리결과		
					
공사장 주 변	공사장 주변 안전망 미설치		기 타 시설물	상하수도 뚜껑 함몰	
	신고내용	처리결과		신고내용	처리결과
					
	공사장 위험물질(철근 등) 노출			소화전 파손	
	신고내용	처리결과		신고내용	처리결과
					
공사장 안전시설물 미설치		통신케이블 단자함 덮개 열림			
신고내용	처리결과	신고내용	처리결과		
					

※ 자료 출처 : 안전신문고(<https://www.safetyreport.go.kr>)

안전순찰 신고 실적 제출양식

1. 안전순찰 담당자 현황

소 속		직 급	성 명	담당업무	사무실	모바일
실/본부/국 (자치구)	부서명 (4급단위)					
00본부	00과	행정7급	홍길동	일반사무 감사업무	000-0000	010-0000-0000

2. 신고실적 현황

소 속		직 급	성 명	전화번호 (사무실 /모바일)	신고일자	신고내용
실/본부/국 자치구	부 서 명 (4급단위)					

안전조치 유예/완화/미비 규정 혁신 관리 카드

관리번호	2019-01	작성일	2019. 0. 0	
시설/업무 구분	소규모 숙박시설 안전관리	관리부서	서울시 ○○과(○○○ : 2133-3052) 자치구 보건소 ○○○과(전화 : 2133-3052)	
개선대상 관련법령	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약칭 소방시설법 제25조)	법령 소관 부처	○○○○부 (00과) (전화 : 2133-3052)	
관련조항	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.			
관련조항 문제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기 조항에 따르면 숙박시설 관계자(소유권자 또는 관리인)가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○ 숙박시설 관계자는 소방안전협회에서 3~10일간 교육을 받으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⇒ 건물 소유자 등이 자기건물에 대해 형식적인 셀프점검으로 안전사고 발생 			
사고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천 00여관 화재사고(' 17.12월) 00명 사망, 00명 중경상 ○ 안양 00모텔 화재사고(' 12.12월) 00명 사망, 00명 중경상 			
개선대책	○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은 “전문소방시설관리업체”가 점검토록 하는 방안으로 법령 개정(자체점검 하지 못하도록 개정)			
법령개정 추진시 장애요인	○ 숙박시설업자들의 안전점검 추가 비용이 들게 되어 반대 시위가 예상됨 (안전점검 비용 국/시비 보조방안 검토 필요)			
법령개정 전까지 시/구 자체 안전조치 대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령 개정 및 시행 전까지는 시 및 구에서 자체점검 시설현황 파악 전수조사 (2019. 2월까지) ○ 전 시설에 대해 점검은 곤란하므로, 취약시기에 안전점검 계도문 전시설에 발송 (2019. 3월 중) ○ 시/구/소방서 공무원 합동 재점검 추진(2019. 1/4분기 중 추진) 			
향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토교통부 건의(2019. 1/4분기 중) ○ 			
참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령 개정 건의안 : 붙임 「소방시설법」 제25조 개정(안) 참조 ○ 관련 방침서 : 붙임 참조 			

「소방시설법」 제25조 개정(안)

현행	개정안
<p>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이하여백 -</p>	<p>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전문소방시설관리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이하여백 -</p>

「서울스마트 불편신고」 앱 신고화면

